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안 번호	1193
----------	------

제출년월일 : 2007년 10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공개의 정의(안 제2조)
- 행정정보의 공표 등(안 제5조)
- 비용부담(안 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 운영(안 제9조)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제1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첨부 1. 근거법령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기관 ·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 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요 통계자료
2.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3. 시정운영 기본방향
4. 전년도 시정주요성과
5. 예산편성내역
6. 재정운영 및 기금운영 현황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 토목, 기타사업에 관한 입찰정보
2. 지방행정의 고시사항
3. 입법예고사항
4. 시의 중장기 계획
5. 행정처분 집행내역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②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 운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제10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
 2. 위촉직 위원 :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 3. 법률 제8171호], 시행일 2007. 7.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4. 4 대통령령 제19985호]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7 - 1142호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30.

제 천 시 장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2. 제정이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보공개의 정의(안 제2조)
- 행정정보의 공표 등(안 제5조)
- 비용부담(안 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안 제9조)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9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운영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456, FAX 641 - 5469 담당자 : 송은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